

〔편그라운드 진건〕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칙

제정 2023년 4월 30일

수정 2023년 8월 2일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회칙은 ‘청소년활동 진흥법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편그라운드 진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, 남양주시공사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청소년운영위원회

제3조(청소년운영위원회)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, 세부 운영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장을 따른다.

제4조(목적) 위원회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편그라운드 진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,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확대와 청소년이용시설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5조(역할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활동
2.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
3. 편그라운드 진건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 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 전달
4.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활동 기획
5. 편그라운드 진건 운영 및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

제6조(자격) ① 위원회 자격은 남양주시 거주 또는 재학중인 9세 ~ 24세의 청소년으로 한다.

② 위원회 단원은 편그라운드 진건 내 자치기구 활동과 검임이 되지 않으며, 매사에 솔선수범한 자세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우선 시 하여야 한다.

제7조(구성) ① 남양주시 9 ~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구성한다.

② 현 위원들 중 대표 청소년들과 담당 지도사의 선발 면접을 통해 구성한다.

③ 위원회 정원은 10명에서 20명 내외로 하며, 성별,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한다.

④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, 부위원장, 서기, 행사기획분과, 미디어홍보분과, 대외협력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8조(임기) 임기는 선발 후 해당연도 12월까지이며 연임이 가능하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① 위원회 위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 및 활동에 불참한 자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% 미만인 자
3.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10조(위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청소년에 관한 사업 및 시설 운영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, 그에 따른 의견반영 및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위원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
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, 회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
-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.
- ⑥ 위원회의 위원은 사상의 자유,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.
- ⑦ 위원회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에 불참할 수 없다.

제11조(임원) ①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, 서기, 행사기획분과, 미디어홍보분과, 대외협력분과장을 각 1인 을 둔다.

- ② 임원에 대한 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 당일 재적인원에 한하여 부여한다.
-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실무간사로 1인 이상을 둔다.

제12조(지위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각 분과장은 각 분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, 분과 회의시 의장이 되며, 운영위원회 내의 각 분과를 대표한다.
- ④ 각 분과의 단원들은 각 분과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업무 및 권한)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.

- 1. 위원회의 전반 사업을 검토, 조정, 심의, 의결한다.
- 2.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.
- 3.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4.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.

제14조(활동의 권한) 위원회의 활동 전반의 집행은 위원장이 맡는다. 단, 위원장이 결위 시 부위원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 부위원장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분과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15조(회의) 본 위원회의 회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
- 1. 정기회의 :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월 1회 실시하되 위원 간의 합의하에 날짜를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2.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가.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준비 및 운영으로 회의가 필요한 경우
 - 나.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논의사항이 발생될 경우
 - 다. 위원 중 한명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임원들이 필요성을 동의 할 경우

제16조(의결)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위원의 1/2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운영규정의 변경)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 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규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9조(보상)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, 펀그라운드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, 상위 기관의 표창을 건의할 수 있으며, 펀그라운드 내 다양한 활동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2023년 (진건)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회칙으로 제정합니다.

2023.8.26.

센터장	김 효 진	김효진
위원장	조 희 영	조희영
부위원장	변 진 혁	변진혁
서기	김 현 진	김현진
행사기획분과장	이 윤 진	이윤진
미디어홍보분과장	차 예 슬	차예슬
대외협력분과장	김 하 늘	김하늘
위원	민 규 원	민규원
위원	허 지 후	허지후
위원	장 민 서	장민서
위원	박 소 은	박소은
위원	어 진 서	어진서
위원	전 혜 인	전혜인
위원	조 수 연	조수연
위원	하 은 지	하은지
위원	신 하 영	신하영
위원	이 도 운	이도운